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경비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,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·관리 및 활용하고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해양경비법」이 개정(법률 제20948호, 2025. 4. 22. 개정, 2025. 10. 23. 시행)됨에 따라 해양경비정보의 수집·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 조회 결과 특이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절차)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·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

1.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
2. 정보수집책임관 및 정보수집 주관·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임무를 분담하도록 할 것

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해양경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·관리할 수 있다.

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7조(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절차)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·관리 및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.</u> <u>1.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의 수집·관리 및 활용 목적을 명확히 할 것</u> <u>2. 정보수집책임관 및 정보수집주관·처리 부서를 지정하고 임무를 분담하도록 할 것</u> <u>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해양경비정보를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화된 파일로 구축·관리할 수 있다.</u> <u>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·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양경비정보의 수집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 교육·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</u>